

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113939(본소), 2022가단113946(반소) 판결
[공사대금 · 기계수거등 청구의 소(반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214434(본소), 2023나214458(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11393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이승진

변론 종결2023. 5. 18.

판결 선고2023. 6.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각 수거하고, 39,691,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2023.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9,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각 수거하고, 피고에게 46,921,4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 인테리어 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논산시 C 소재 건물 중 2층에서 'D 내동점'이라는 상호로 실내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1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와 E 기계 납품 및 설치(이하 '이 사건 기계 납품'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피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은 16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 기계 2대의 납품 및 설치 대금은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내용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20. 12. 18.경 위 공사 및 기계 납품에 대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는 2021. 1.말경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21. 2. 8.경 이 사건 골프장에 별지 목록 기재 E 기계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납품 및 설치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에게 2021. 2. 18. 'E 장비대외'를 품목으로 하여 59,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21. 4. 5. '인테리어공사대금'을 품목으로 하여 148,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해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비를 입금하였다. 다만 원고는 2021. 1. 19. 아래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1	2020. 12. 4.	10,000,000	F
2	2020. 12. 4.	10,000,000	G
3	2020. 12. 5.	10,000,000	F
4	2020. 12. 16.	4,500,000	F
5	2020. 12. 22.	28,400,000	(주)A
6	2020. 12. 26.	20,000,000	(주)A
7	2021. 1. 7.	20,000,000	(주)A
8	2021. 1. 12.	20,000,000	G
9	2021. 1. 13.	20,000,000	G
10	2021. 1. 14.	20,000,000	G
11	2021. 1. 26.	20,000,000	G
12	2021. 2. 1.	13,220,000	(주)A
13	2021. 2. 7.	10,000,000	G
14	2021. 2. 8.	5,000,000	G
합계	211,120,000		

마. 피고는 2021. 7. 30. H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I의 신품 E 기계 2대에 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보관하고 있다.

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여 설치한 이 사건 기계는 2015. 1. 29.경부터 사용되어 온 중고품이다. 주식회사 I은 2015년경부터 직영점이 아닌 일반매장 점주들에게 신품 E 기계를 판매하기 시작하다가 2019년도에 제품 판매를 중단하였고, 중단 후 2021년부터 제품판매를 재개하였다.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이 체결된 2020. 12.경은 제품판매를 중단하였던 시점으로 신제품을 일반매장 점주들에게 판매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및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인테리어 공사 대금 및 납품 대금(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 대금'이라고만 한다)이 총 205,700,000원¹⁾인 사실, 원고가 위 공사와 납품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05,7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86,6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9,0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다툼에 대한 판단

1) 공사대금 채무 변제 항변 가) 피고가 원고에게 211,12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중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으나, 2020. 12. 16. 지급한 4,5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이 아닌 일식집 철거 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2. 16. 4,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는 위 금원을 이 사건 공사 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일식집 철거 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위 철거 공사의 계약 내용이나 철거 대금의 금액 등을 증명하여 위 4,500,000원이 위 채무에 충당되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철거공사 대금의 이권이 있어 입금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철거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피고가 출금기록사항에 별도로 '철거대금'이라는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2020. 12. 16.자 4,500,000원에 관하여는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20. 12. 16.자 4,5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191,120,000원으로 판단한다.

2)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 해제 항변 가) 피고는 본소에서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의 해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반소를 통하여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기계의 수거와 납품 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만약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므로, 위 기계 납품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의 항변 단계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에는 납품 계약 체결 당시부터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있었고,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은 위 계약 제5조 제1항 (ㄷ)에 근거하여2),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의 송달에 의해 2022. 4. 8.경 해제되었다(피고는 원고에게 2021. 6.경

구두로 해제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해제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가지는 기계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품 E 기계의 단가가 15,700,000원이고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의 단가가 17,000,000원인 점을 비교할 때, 피고의 설치 및 등록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품과 유사하거나 적어도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기계를 납품받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러나 이 사건 기계가 중고품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초 사용일이 2015. 1. 29.로서 피고의 골프장에 설치할 당시 이미 사용기간이 5년이 경과한 상태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지 2일 만에 '스크린 화면, 색상 이상'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I에 A/S를 접수하였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여 I에 A/S를 수차례 접수하였고, 결국 설치한지 6개월 만인 2021. 6.경 이 사건 기계의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피고는 결국 원고가 설치한 기계를 철거하고, 2021. 7.경 부터 신품 E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사용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 제5조 제1항 (ㄷ)에 의하면, "원고 또는 피고가 기타 내용으로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 또는 피고는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해지 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납품 대금 채무도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대금 168,300,000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191,120,000원(인테리어 공사 대금 및 기계 납품 대금으로 각 얼마 지급되었는지에 쌍방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3))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이 사건 위 인테리어 공사 대금 채무도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변제대금 중 적어도 168,300,000원은 인테리어 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은 취지로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및 원고의 다툼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기계를 수거하고, 피고에게 납품 대금 37,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하였는바, 이에 해당하는 공사비 24,101,495원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1	바닥타일 미시공원고는 이 사건 실내스크린골프장의 복도와 9개 호실 바닥 150㎡에 깔려 있는 옛날 기존 타일을 새것으로 교체해줄기로 하였음에도(갑제 2호증의 1 '견적서' 3쪽 참조), 위 타일 중에서 복도 일부의 약 30㎡정도만 타일을 교체해주고 나머지 120㎡에 대해서는 교체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공사비 16,255,676원을 지급해야 한다.	16,255,676원
2	화산석 미시공원고는 엘리베이터 앞과 복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옛날 화산석 80㎡를 새것으로 교체해줄기로 했는데도 이를 교체 시공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공사비 6,275,337원을 지급해야 한다.	6,275,337원
3	칼라유리 미시공원고는 카운터에 칼라유리(두께 5mm) 300평을 설치해줄기로 했는데도 이를 시공해주지 않았으므로(을제 10호증 '사진' 참조), 해당 공사비 606,720원을 지급해야 한다.	606,720원
4	전기순간온수기 미시공원고는 피고가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에 전기순간온수기를 설치해줄기로 하였음에도 설치하지 않았는바, 해당 공사비 563,762원을 지급해야 한다.	563,762원
5	정수기 배관 미시공원고는 이 사건 실내스크린골프장에 정수기만 가져다놓고 정수기에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은 설치해주지 않았다. 피고가 400,000원을 들여서4) 원고는 소장에서,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처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은 148,500,000원, 이 사건 기계 납품대금은 59,4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최종 제출한 2023. 5.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05,700,000원이고"라고 진술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는 총 186,620,000원이고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일응 19,080,000원(= 205,700,000원 ~ 186,62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대금이 205,700,000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대금이 205,7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설령 다툼 없는 사실로 볼 수 없더라도, 공사대금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본이 되는 견적서와 처분문서인 공사계약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16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 기계 2대의 납품 및 설치 대금은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변경계약서 등 대금 변경 합의에 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는 점, 갑 제3호증의 1 세금계산서 품목에는 "E장비대외"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계 납품 외의 다른 항목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견적서 및 계약서와 다르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사대금 등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사 대금은 205,700,000원이라고 볼이 타당하다. K에 의뢰하여 정수기의 배관공사를 하였으므로(을제 11호증 'K 난공사 설치동의서' 참조), 위 정수기 배관공사비 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400,000원
합계	24,101,495원	

다) 본소에서 피고가 주장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4,58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4,101,495원의 미시공 공사비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9,521,495원을 반환할 의무만 남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9,521,495원과 해제에 따른 기계 납품 대금 반환금 37,400,000원 합계

46,921,4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

2) 기계 수거 및 납품 대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 기계 수거 청구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내 소재한 이 사건 기계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납품 대금 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계 납품 대금 37,400,000원을 전부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납품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위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먼저 인테리어 공사 대금 채무에 전액 충당되고 나머지 만이 기계 납품 대금 채무에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191,120,000원 중 인테리어 공사 대금으로 충당된 168,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테리어 공사 중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 반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전체적인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사를 미시공하였으므로 각

미시공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6) .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각 공사를 미시공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추가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선행하여 아래 항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3) 미시공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2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10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7) 으로서 24,101,4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바닥타일 공사	O16,255,676원	이 사건 골프장 전체 면적과 이 사건 공사 계약 중 타일 교체 내역의 수량에 비추어 볼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바닥의 전체 타일이 아닌 일부 타일만 교체해주기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정인이 현장에서 타일 교체시 발생될 수 있는 주변 타일 또는 줄눈의 부분 파손부를 확인한 결과, 원고는 교체해주기로 한 계약수량 150개 중에서도 일부만 교체하였다. 위 계약수량에서 위 일부 교체된 부분을 제외하고 미시공된 바닥타일 부분의 하자보수 비용 16,255,676원을 인정한다.
2	화산석 공사	O6,275,337원	계약 내용 중 '화산석 공사'는 벽면 화산석 인테리어 공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화산석 공사가 미시공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미시공 하자의 보수 비용 6,275,337원을 인정한다.
3	칼라유리시공	O606,720원	견적서 내역에 '칼라유리(카운터)'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위 카운터 부분 칼라유리공사가 미시공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미시공 하자 보수 비용 606,720원을 인정한다.
4	전기순간온수기 설치공사	O563,762원	전기순간온수기 설치공사는 미시공되어 피고가 자비로 설치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피고가 해당 공사는 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미시공 하자 보수 비용 563,762원을 인정한다.
5	정수기 배관공사	O400,000원	견적서의 '9.설비공사' 부분에 '주방설비, 정수기'의 '수도, 하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정수기 사용을 위한 배관공사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위 배관공사를 위해 K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400,000원을 하자 보수 비용으로 인정한다.
합계	24,101,495원		

나) 원고의 다툼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순번 1, 2, 4 하자의 경우 견적가에 해당하는 공사 대금을 그대로 반환하면 될

뿐, 피고가 주장하는 감정산출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순번 5 하자의 경우 배관 공사는 시공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견적가만 반환하면 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미시공 하자 부분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등 참조),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정수기 배관공사의 경우 미시공 되어 피고가 K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된 사실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일인 2021. 1.말경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이 실시된 2023. 2. 13.까지 약 2년이 지나 원고가 현장 감정 당시 교체 시공한 타일을 기억하기는 어려워 이를 지정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이 사건 골프장에 바닥 타일의 감정 당시 자연발생적인 파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바닥타일 공사의 경우 당초 견적서와 달리 철거를 위한 노무비 항목 등이 추가되어 약 10,000,000원의 큰 차이가 발생한 점 외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손해배상액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6,871,046원(= 24,101,495원 × 70%)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고, 39,691,046원(= 원상회복금 22,820,000원 + 손해배상금 16,870,04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4. 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판사김성대

별지

1) 원고는 소장에서,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처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은 148,500,000원, 이 사건 기계 납품대금은 59,4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최종 제출한 2023. 5.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05,700,000원이고"라고 진술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는 총 186,620,000원이고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일응 19,080,000원(= 205,700,000원 ~ 186,62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대금이 205,700,000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대금이 205,7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설령 다툼 없는 사실로 볼 수 없더라도, 공사대금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본이 되는 견적서와 처분문서인 공사계약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16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 기계 2대의 납품 및 설치 대금은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변경계약서 등 대금 변경 합의에 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는 점, 갑 제3호증의 1 세금계산서 품목에는 "E장비대외"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계 납품 외의 다른 항목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견적서 및 계약서와 다르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사대금 등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사 대금은 205,7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제출한 2022. 4. 6.자 반소장에 의하면, 피고는 "E기계납품설치공사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로써 원고에 대해 이 사건 E납품설치공사계약을 해제하는 바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해제의 근거는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3) 다만 을 제4호증의 6(쪽)에 E 대금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4) 원고는 소장에서,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처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은 148,500,000원, 이 사건 기계 납품대금은 59,4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최종 제출한 2023. 5.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05,700,000원이고"라고 진술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는 총 186,620,000원이고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일응 19,080,000원(= 205,700,000원 ~ 186,62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대금이 205,700,000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대금이 205,7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설령 다툼 없는 사실로 볼 수 없더라도, 공사대금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본이 되는 견적서와 처분문서인 공사계약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16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 기계 2대의 납품 및 설치 대금은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변경계약서 등 대금 변경 합의에 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는 점, 갑 제3호증의 1 세금계산서 품목에는 "E장비대외"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계 납품 외의 다른 항목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견적서 및 계약서와 다르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사대금 등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사 대금은 205,7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반소에서 이 사건 기계 납품 계약을 해제하면서도 본소 및 반소에서 기계 납품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인테리어 공사 대금 및 기계 납품 대금의 합계 총 205,70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공사비 191,120,000원을 제외한 14,58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 원고의 14,580,000원 공사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미시공 하자 관련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하 인테리어 공사 대금 및 기계 납품 대금으로 각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피고가 본소에 대한 항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을 항목을 구별하지 않고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 기계 납품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진정한 의사를 더하여 피고의 지급액은 일단 인테리어 공사 대금 채무에 충당되고 나머지 만이 기계 납품 대금 채무에 충당된다는 주장으로 선회한다.

6) 위 반환 청구의 근거가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인지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의

반환청구인지도 불명확하다.

7)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26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바닥타일 공사 등 미시공 된 부분의 견적 내역이 전체 인테리어 공사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수의 실내골프장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관이 실내골프장 영업에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하자 일부는 계약과 달리 아예 미시공한 점,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미시공 부분을 계약내용에서 제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하자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